

부가가치세 절세전략(I)

박봉수 / 세무회계사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제2항

2. 국세청의 사업자 관리 및 매출액 신고 nulla

1) 국세청(세무서)은 사업자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세무행정이 전산화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원정보수집전답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사업자의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를 접수 받아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제보 및 고발 접수도 받습니다.

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등을 전산 분석한 결과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조사를 받지만, 사업의 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탈루 수법 등으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요탈루유형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탈루유형 수시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거래처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의 증가,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 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큽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매출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 %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둘게 됩니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22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제27조

4.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 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7조

5. 주요 세무일정

- 1) 8월 : 원천징수세액 납부(10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31일)
- 2) 9월 : 원천징수세액 납부(10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0일)

참고문헌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가이드”>

박봉수 세무회계사무소

주 소 광주 서구 치평동 1187케이원오피스타운 8층 802호
전 화 062) 383-3600 팩 스 062) 375-6600
H. P. 016-613-7511 이메일 Pbstax@hanmail.net